

의안번호	2213870
의 퇴 인	이정헌의원
회 답 일	2026. 1. 15.
추 계 번호	25B5850

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. “우정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함 <u><신 설> 바. 공공서비스(복지 및 환경 분야 등의 대국민 서비스 중 행정기관 등이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위탁하여 우체국망을 이용함으로써 국민편익 및 공공복리가 증진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수요 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</u>	의무규정
2	안 제17조의3(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·운영)	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바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정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(이하 “플랫폼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	•미대상 －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복지우편·폐의약품 회수사업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,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식으로, 위탁수수료 등에 따른 세외수입(2025년 기준 약 11억원 수입 발생 예상)이 발생하고 있음 － 우정사업본부는 개정안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을 우정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현행보다 대행·수탁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, 현재 우정사업본부 인력 및 물류 인프라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하며, 업무 대행·위탁에 따른 대가 및 수수료 등을 지급받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임
2	안 제17조의3(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·운영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·운영(안 제17조의3)

- 개정안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정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을 구축·운영할 경우 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기능 및 구축 방식, 이에 따라 필요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종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플랫폼 구축·운영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, 개정안은 플랫폼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,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방식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－ 우정사업본부는 대행 및 수탁하는 공공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,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·운영 방식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